

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6] <개정 2024. 12. 31.>

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(제26조의2 관련)

구 분	연구사, 지도사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
가 산 비 율	5%	3%
비고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제1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.		